

#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7.

발의자 : 임이자 · 문진국 · 김한표  
함진규 · 이명수 · 윤영일  
원유철 · 윤종필 · 곽상도  
장석춘 · 김순례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.

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“물 재이용 기본계획”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“물 재이용 관리계획”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5항제3호의2, 제6조제7항 신설).

##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「하수도법」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·공급에 관한 사항 및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하수처리수 공급계획

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(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수)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5

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생 략)</p> <p>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2. 「하수도법」 제4조의2제</u></p> <p><u>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·</u></p> <p><u>공급에 관한 사항 및 수요대</u></p> <p><u>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하</u></p> <p><u>수처리수 공급계획</u></p>
<p>4. ~ 6. (생 략)</p> <p>⑥ · ⑦ (생 략)</p> <p>제6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~ ⑥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·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</u></p> <p><u>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</u></p> <p><u>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공업용</u></p> <p><u>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</u></p> <p><u>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</u></p> <p><u>처리수 재처리수(하수처리수가</u></p> <p><u>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</u></p> <p><u>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수</u></p>

처리수)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  
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 
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하  
여야 한다.